

2022년 지역인재(8·9급)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지역인재(8·9급)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7.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수습직원 4명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군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계		4명	
8급	행정직군	1명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술직군	1명	
9급	행정직군	1명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술직군	1명	

2. 선발개요

- ①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대학 학교장이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천
- ②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 선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함

(2) 추천대상 자격요건: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졸업자: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졸업한 자 (2019. 1. 1. 이후 졸업자)
-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2022년 하반기)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함
- ※ 2022. 8월까지 졸업(학위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됨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단, 2년제 대학인 경우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함

③ 학과성적

-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함

④ 외국어능력

-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붙임 1]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의 기준 점수 이상인 자(단,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는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없더라도 [붙임 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 추천 가능)
- 어학능력점수는 2020. 3. 25. 이후 시행한 시험에 한해 적용되며,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또한 어학능력점수는 필기시험 전일(2022. 3. 25.)까지 유효해야 함.
- ※ 당해 검정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사·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OPIC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도 인정됨(단,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 ⑤ **응시가능연령**: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3) 추천방법

가. 대학별 자체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발

- 자체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 추천 시 준수사항
- 추천대상자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
- 전공계열에 따라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추천하되, 전공계열로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직급표에 따라 임용예정직렬이 속한 직군으로 추천
- ※ 행정직군: 인문사회계열, 세무계열, 전산계열, 사회복지계열 등
- 기술직군: 이공계열
- 전공계열(행정직군 계열, 기술직군 계열)간 남·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천하되 기술 직군 추천인원이 반드시 50%이상이어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나. 추천권자: 추천대학의 총장(학장)

다. 추천인원: 대학별 20명 이내

라.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 응시자 본인이 접수기간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원서접수방법은 5번 항목 참조)

(4) 추천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2. 2. 28.(월) ~ 3. 3.(목) 09:00~18:00

- 각 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자(2022. 3. 3. 18:00) 도착 분까지만 접수함
- ☞ 우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우63122)

나. 제출서류

- 2022년 지역인재(수습직원)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
-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 입증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기본증명서 1부(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자)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학교 추천	원서접수	원서접수 취소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28.(월) ~ 3.3.(목)	3.14.(월) ~ 3.15.(화)	3.14.(월) ~ 3.15.(화)	필기시험	3.17.(목)	3.26.(토)	4.27.(수)
			면접시험	4.27.(수)	5.19.(목)	5.31.(화)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필기시험·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

(2) 시험단계

구분	1차, 2차 시험	3차 시험
전 직렬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일정상 1차 및 2차 시험 합격자는 동시에 발표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발표)

- ※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다만,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동점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필기 및 면접시험 결과 포함)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가. 필기시험

◦ 시험과목: 국어, 한국사, 사회

- ※ 사회과목 출제범위: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 과목당 20문항, 객관식형(4지 택1), 100점 만점
- ※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 시험시간: 60분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

나. 접수기간: 2022. 3. 14.(월) ~ 3. 15.(화)

다. 접수시간: 24시간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라. 응시수수료: 5,000원

-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
-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 가능

마.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군 및 직급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 (응시직군은 추천서에 기재된 응시직군으로만 접수 가능)

-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단, 응시원서 접수 시 면제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함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학력 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수습직원의 대우

-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고유의 업무를 부여받아 1년간 수습근무를 수행한 후 수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 ※ 임용직렬(직류)은 전공과 가장 가까운 직렬로 별도 결정
- 보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지역인재선발채용운영규정에 의거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
- ※ 수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수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

7. 기타사항

- 공직부적격자의 사전검증을 위한 면접이 강화되었으며, 지원분야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면접성적불량자는 불합격처리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 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며, 당해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추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064-710-6223~5)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8급	9급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83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700점 이상
테 프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700점 이상 <또는 뉴테스(New TEPS): 386점 이상>	625점 이상 (또는 New IBTS 34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M2 이상	IM1 이상

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 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8급	9급
중국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18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오 픽(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2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840점 이상	6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일본국제교류기구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1 100점 이상	N2 100점 이상
	오 픽(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3 이상

비고 : 추천일 전일까지 위 표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한다.

【붙임 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캐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캐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캐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해양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입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입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공인회계사(7) 세무사(7)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3) 멀티미디어콘텐츠 작전문가(9)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작전문가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호사 공인회계사(4)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감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품질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품질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간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 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 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 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 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 리사 3급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